

실외 공간으로서의 발코니 구현을 위한 건축적 제안

Architectural Proposal for Balcony Installation
in the post COVID era

글. 이양재
Yi, Yangjae
엘리펀트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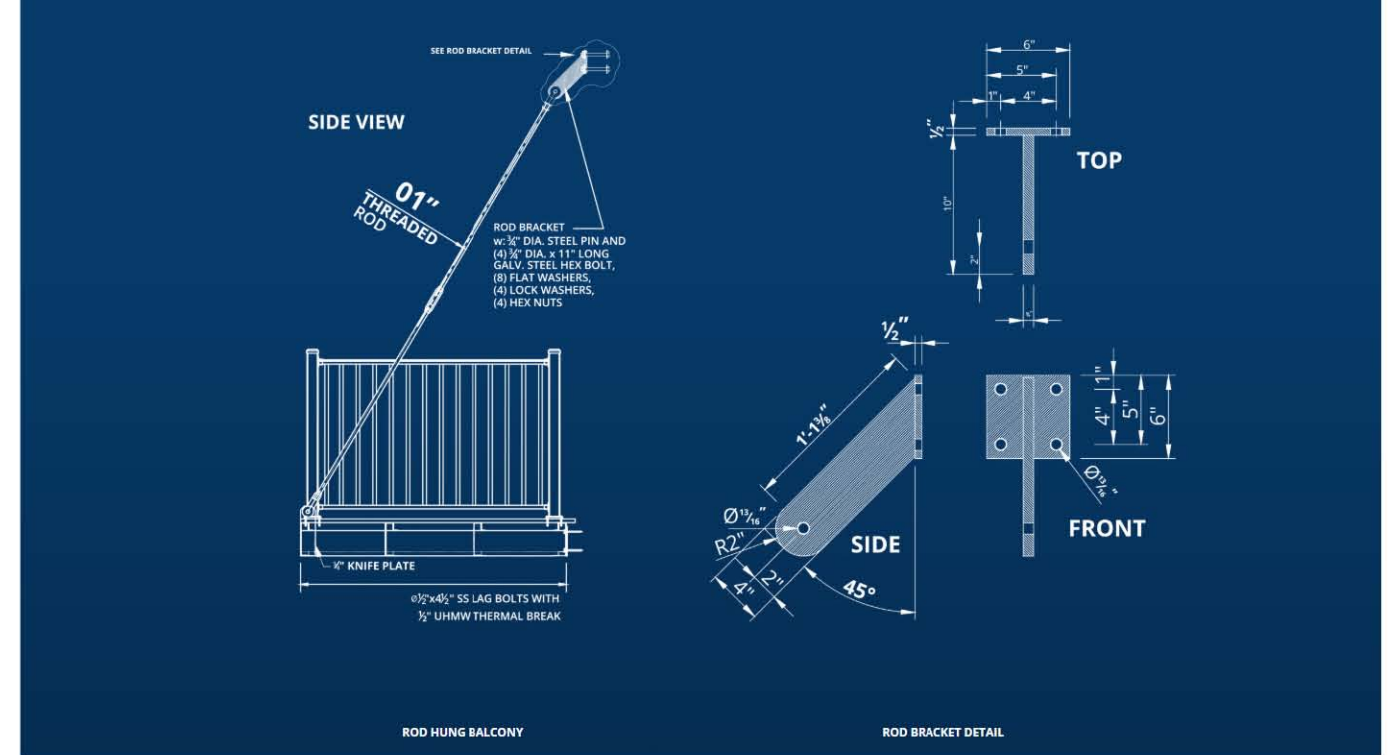
후지모토 소우가 설계한 라브르 블랑(L'Arbre Blanc)은 '흰색 나무'라는 뜻이다. 주거와 사무, 문화 공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본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발코니다. 나무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뻗은 것처럼, 넓고 다양한 발코니들이 돋보인다. 발코니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야외 생활 및 거주민들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위해 계획되었으며, 일부 복층 아파트의 경우 외부 계단을 통해 발코니들이 이어지기도 한다.

얼마 전 일본 건축사 후지모토 소우가 설계한, 프랑스의 주상 복합 건물이 완공되어 화제에 올랐다. 이 건물은 최대 7.5m 길이의 캔틸레버에 이르는 7~35㎡ 면적의 다양한 발코니가 건물 입면을 뒤덮어, 마치 잎사귀 가득한 한 그루의 나무처럼 디자인되었다. 최근의 전 지구적인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동그런 건물 입면을 가득 메운 개성 만점의 수많은 발코니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국내에도 점차 외부 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발코니를 가진 건물들이 등장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그렇게 역동적인 각양각색의 발코니들을 설계하고자 하여도 국내의 관련 법규들로 인해, 실제 구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발코니는 서양 건축에서 입면의 일부가 튀어나온, '지붕 없는' 옥외 플랫폼'을 의미하였다. 이는 지상이 아닌 고층의 실내공간에서 외부의 자연을 접하는데 용이하였기에, 초기의 국내 아파트에서도 도입되었다. 그렇게 들어온 발코니 문화는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실내 확장의 교묘한 수단으로 변질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발코니 확장 관련 수많은 논란들은 오랜 세월 '태생적으로 옥외공간'이었던 발코니를 '실내공간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관련 법규 및 지침들 역시 '발코니의 옥외공간으로서의 성격' vs '보편화 불법 확장의 현실' 속에서 타협점을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건축법에 명시된 발코니의 정의를 보면,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발코니의 취지가 드러나 있음에도, 한편으로는 필요에 따라 실내 공간화가 가능한, 이중적인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

옥외 공간이었던 발코니가 이처럼 실내로서 편입이 가능해지다 보니, 역설적으로 '발코니 관련 기준 해설'에서는 과도한 실내공간화로 인해 '발코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기까지 하였다. 여기서도 발코니의 성격을 '실내화된 옥



prefabricated balcony 1

© www.wahoodecks.com

외공간이자, 실내·외 사이의 절충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²⁾ 면적 산출 방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건축법상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벽과 기둥으로 둘러싸인 실내공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발코니는 사전적 의미로서 외벽 바깥에 위치하는 옥외공간임에도, 언제든지 실내화하거나 지붕이 덮인 공간으로 기정사실화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면적 산출 기준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³⁾

한편으로는 이처럼 일반적으로 실내공간화에 대한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한 발코니와 달리, 발코니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도 만나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는 외부 벽면 길이나 벽면 면적에 대비하여, 발코니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데, (실내공간화가 불가능한) '실외공간의 발코니 형태'를 설치할 경우, 규정 완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⁴⁾

이처럼 지금까지의 발코니와 관련된 조항이나 지침들을 보면, 우리 시대 발코니가 처한 이중적인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내공간으로의 확장을 고려한 기존의 발코니와 달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실외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발코니를 장기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발코니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옥외 성격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발코니 상부에 해당 층의 지붕(또는 지붕 역할을 하는 슬래브)이 있는 경우, 실내공간화가 용이해지므로 옥외 공간형 발코니 타입에는 지붕이 배제된 형태를 전제 조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한 '실외공간'이므로, 건축법상의 면적 및 관련 기준도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2000년도 이전의 건축법에서처럼 발코니 외곽선으로부터 수직면의 면적

2) 발코니 관련 기준 해설(건축행정질리잡이중, 국토교통부, p55, 2013)

▶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

1.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2.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되거나, 설치기준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다 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6에 따라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식재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단, 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만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prefabricated balcony 2

© www.wahoodecks.com

중 1/2이상이 난간벽이나 유리 새시 등으로 덮일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패널링 방안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⁵⁾

아울러 개방형 발코니보다는 돌출형 발코니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개방형 발코니는 외벽의 길이와 발코니의 길이가 거의 동일하면서 얇고 긴 선 형태였으므로 실내공간화가 용이하였다. 이와는 달리, 점 형태의 돌출형 발코니는 필요한 구간에만 설치하여 일부의 실내 공간에서 외부 공간인 발코니로 나올 수 있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년 중 장마나 혹한기를 비롯하여 실외 활동이 어려운 시기가 뚜렷이 존재하며, 난방 문화로 인해 실내의 온도차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입면을 따라 설치되는 개방형 전면 발코니는 그만큼 개구부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발코니로의 진출입을 위한 창호 설치가 다수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설치되는 돌출형 발코니에 비해 열효율이나 실외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 다. 따라서 건물 전체의 열효율과 미관 등을 고려한다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개방형 발코니 보다는 필요 구간에만 설치되는 돌출형 발코니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좀 더 발전시킨다면, 신축 건물만이 아니라 기존의 건축물에도 손쉽게 부착이 가능한 선 제작 방식(pre-fabricated)의 발코니 시스템 역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기존 건물에도 쉽게 설치가 가능한 이러한 산업화된 방식은 발코니의 다양한 활용법을 개선할뿐 아니라, 유사시 대피가 어려웠던 오래된 건물들의 피난 용도 등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실내공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실외공간'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실내·외 사이 전이 공간으로서의 발코니도 이에 해당한다. 오랜 세월 발코니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실내 확장의 교묘한 수단으로서 타협점을 찾아왔다. 이제는 본연의 형태에 어울리는 옥외 공간이자, 돌출형 타입의 발코니로서 화려하게 귀환할 시간이다. 다양한 발코니들이 이 땅에도 많이 등장하여, 멋진 입면과 깊이 있는 공간감을 뽐내는 건물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999.03.12.):

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이양재 엘리펀츠 건축사사무소·건축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다년간의 시공회사와 설계 사무소 근무 후, 엘리펀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건축사로서 항상 디자인 이상의 가치를 고민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건축물 시장의 산업화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lavisita@studio-elephants.com



“일간 건축사는 삶을 조직하는 건축과 건축사(Architect)의 건축, 건축 너머의 알파나 정서에 대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19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된 이래 1965년 5월 15일 제1호 건축사가 탄생되었습니다. 월간 건축사는 1965년 10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된 후 이듬해 7월, 회원지로 창간했습니다. 한국 건축문화를 말하는 건축사의 건축작품과 비평 등을 싣고 있으며, 한국 건축계가 고민해야 할 주제에 대해 논하는 ▲건축담론과 ▲건축계 및 사회 주요인사 인터뷰 ▲해외건축동향 ▲학생기자 기획 ▲에세이 ▲영화, 광고 등 건축문화예술 기획 등을 게재하며, '건축'이란 공간을 통해 사람들과의 소통을 지향합니다. 월간 건축사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에서는 건축계 안팎의 최신 소식과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모든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창립총회 / (하)회장선출 투표 현장 (당시 장기인 회장 선출) 건축사 창간호 1966년 7월

kiramonthly.com / www.facebook.com/kiramonthly

* 월간 건축사는 건축사 회원뿐만 아니라 은행, 호텔, 대학, 전국 관공서 및 공기업 등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월간 건축사를 통해 건축사사무소를 홍보하세요. 소규모 회원사를 위한 연간 광고료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의 02-3415-6862~5>